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중앙정부 노동이사제에 비해 운영 대상, 위원 수, 자격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중앙정부는 정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는 반면, 서울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중앙정부는 1000명 이상이지만 서울시는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이사 운영기준을 정부 공공기관 수준으로 조정하여 노동이사 운영기준 정원을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복수 선임 요건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노동이사 자격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